

규제확인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신청인	이름(회사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	
	주소		
	대표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새로운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 ·서비스 및 기술	명칭		
	유형 (중복 가능)	☐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☐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☐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	
	주요내용		
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허가·승인·인 증·검증·인가 등 (아는 경우에 작성)	예상되는 행정기관 예상되는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		

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·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당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·서비스 및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. 해당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·서비스 및 기술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·서비스 및 기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
------	--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해당 법조문	처리 절차	서식
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	규제 신속확인 신청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·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·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↓ 국토교통부장관(수탁기관) ↓ 국토교통부 소관인 경우에는 직접 검토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↓ (국토교통부장관)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(관계 행정기관의 장)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↓ (국토교통부장관)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(관계 행정기관의 장) 30일 이내에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 (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) ↓ 국토교통부장관(수탁기관)이 신청자에게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통보	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 서식
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		
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		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 서식